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본 개정조례안은 '99.11.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11.1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 여성발전센터의 세입·세출상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여성발전센터의 일부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금액을 현실화함(안 제2조 별표)

- 기술교육수강료 및 생활문화수강료 :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3,000원 인상
- 수영수강료 : 금액 동일 징수기준을 월 12시간 이내에서 20시간 이내로 변경

○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 :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센터의 수입 지출상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사용·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 및 징수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술교육 수강료와 생활문화수강료는 월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각각 3,000원(42.9%)를 인상하고, 보육료는 5,000원에서 7,500원으로 2,500(50%)을 인상하고, 수영수강료는 금액은 변경하지 않고 징수기준을 월 12시간 내에서 20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연장함.

생활문화수강료의 경우 1일 3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1시간 단축한 것은 사실상 인상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수영수강료는 시간을 오히려 늘려 수강료를 인하한 효과가 있다고 보임.

○ 사용료, 수강료 등의 인상으로 '99년 11월 정원을 기준으로 연간 2억 4백여만원의 세입증대와 세출 증 자체수입 비중도 14.2%에서 18.2%로 개선이 예상됨.

'95년 1월 이후 조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실 소요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비취볼 때 사용료 수강료 등의 인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용료 등의 조정의 근거가 되는 수지 분석 내지 원가계산이 없이 타 시·도의 여성회관, 복지관 등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고로 하여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인상률, 인상폭의 결정에 대한 산출근거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수강료 등을 납부한 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세입이 감소될 수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제고와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한 불평부당한 제도의 개선과 규제개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이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2.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제2조 관련)			
구 분	단 위	사용료 등	징수기준
기술교육 수 강 료	1인1월	10,000원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생활문화 수 강 료	1인1월	10,000원	· 1일 2시간 이내 · 주 1일 기준
보 육 료	1인1월	7,500원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수 영 수 강 료	1인1월	40,000원	· 월 20시간 이내
※ 수강료 및 보육료는 강의·보육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문화예술킨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문화예술킨흥조례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해 오던 문화관광국 소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 위원회 통폐합정비계획에 의하여 주택국 소관 건축 조례를 개정('99. 7. 31)하여 건축위원회의 한 분과위원회로 통폐합되었으나, 관련조항의 위원회 명칭이 정비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비하고, 동 분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건축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에 설치·운영중인 많은 위원회 중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시정개혁차원에서 폐지·통합하여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과 통합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종전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한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 통폐합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이 종전과 다름이 없어 이는 위원회 통폐합이 형식적인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통합으로써 실질적인 통합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입법체계상의 혼란, 소관업무 부서간 갈등과 업무 비능률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완전히 통합하여 주택국에서 관장하도록 하거나, 종전과 같이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를 문화관광국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하더라도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킨흥에관한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함. ○ 현행 조례상 의회가 미술작품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시 5명을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23조와 같이 이를 삭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현행처럼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거나 소관 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위원회 통폐합의 타당성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조례 정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안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99. 12. 1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제출되어 '99. 12. 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업무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 마련한 서울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